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2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승원 · 김용만 · 이강일
김원이 · 박상혁 · 강준현
김남근 · 민병덕 · 박범계
윤준병 · 임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써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개정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제35조(과징금) ① -----
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	-----
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	-----
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	-----
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
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
경우 등에는 <u>5억원을</u> 초과하지	----- <u>50억원을</u> -----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
부과할 수 있다.	-----.